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7. 11.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및 추진근거	1
2. 참여 주체별 역할	3
3. 예산 운용	4
4. 사업 추진 체계	5
II. 참여 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등	6
1. 참여 신청	6
2. 참여신청서 심사	8
3. 참여신청서 승인	10
4. 사업실시	11
III.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13
1. 지원대상	13
2. 지원요건	16
3. 지원제외	20
4. 지원내용	23

목 차

IV.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30
1. 장려금 지급 신청	30
2. 장려금 지급	32
V.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35
1. 지도 및 점검	35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37
■ 서 식	
서식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서	43
서식 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서 심사표	44
서식 3.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45
서식 4.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 변경신청서	46
서식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47
서식 6.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48

1 목적 및 추진근거

1-1.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성장유망업종 등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청년 추가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 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1 -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이 지침은 동 사업 공고일 이후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함

1-4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2 -

2 참여 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본부

- ①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 ② 고용장려금 사업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③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인식 확산 및 제도홍보
- ④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② 사업의 홍보 및 대상 사업장 발굴
- ③ 사업 참여 신청서 심사 및 지원규모 결정
- ④ 장려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장려금 지급
- ⑤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 ⑥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3. 사업주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② 사업 참여 신청서 승인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등 신청 및 승인 내용 이행

- ③ 고용장려금 청구 및 수령

- ④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2-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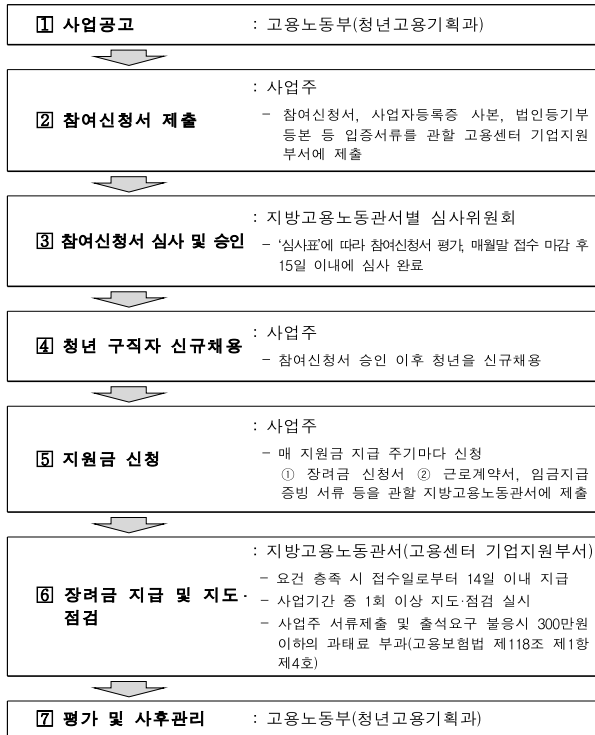
3 예산 운용

- ①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는 사업을 공고하고, 각 지방청(대표지청)별 지원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승인한도) 배분
- ② 각 지방청(대표지청)은 배분받은 예산(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소속 지청의 예산을 적절히 배분

- 3 -

- 4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장려금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



1 참여 신청

1-1.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①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
- ②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 ③ 참여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 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④ 참여신청서 접수·심사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 참여신청서 접수 및 심사일정을 이 사업 시행공고문에 정하여 시행함
-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

1-2. 구비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증 증빙서류

1-3. 신청서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 ①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②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참여신청서 심사

2-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구성된 「고용장려금지원사업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서 심사·승인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규정을 준용함

◆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주요 내용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심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력풀 중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
- 특히, 심사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사업계획서 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함
-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심사를 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의견서를 보내온 때는 대면심사수당의 50% 내외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접수된 참여신청서 중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 해당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산업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

2-2. 심사방법

- ① 심사위원은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평가
 -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 심사표'(별지 2호 서식)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
-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3 참여신청서 승인

3-1. 승인절차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결과가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 승인을 하더라도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 결정하도록 유의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3-2. 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참여신청서 (불)승인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 ※ 불승인(일부승인)의 경우는 그 사유를, 승인통지의 경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통지

3-3. 승인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4 사업 실시

4-1. 사업주 의무

- 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참여신청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청년 신규채용)
 - (이행기간)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청년 신규채용)하여야 함
 - (이행기간 연장)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3개월) 연장할 수 있음
 - ※ (예) 당초 청년 3명을 채용예정으로 승인받았으나, 이행기간 까지 2명을 채용하여, 이행기간 연장 후 3개월 안에 추가적으로 청년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 등
 - (신청 취소) 사업주가 이행기간 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②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4-2. 사업참여신청 및 사업주 변경

- ① 사업주는 사업 참여신청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 ②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②에 따라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사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신청서 변경 및 사업주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4-3. 서류보존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1 지원대상

1-1.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또는 주요 품목으로 확인(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 “주요품목”을 직접적으로 생산·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 “주요품목”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주요품목”을 생산·서비스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을 생산·서비스하거나,
 - 구체적인 사업계획(공장설립 등) 혹은 R&D실적(특허출원 등)이 있는 등 “주요품목”을 생산·서비스하기 위한 준비중이면서 당해 분야에 청년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후순위)

< 지원제의 사례(예시) >

- ① 신성장 품목을 이용하여 도·소매만하는 경우
- ② 신성장 품목을 이용하여 상품매출만 창출하는 경우
- ③ 신성장 품목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제품을 생산하여, 신성장 영위기업에게 납품하는 경우
- ④ 신성장 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단순히 신성장 품목을 사용 또는 활용만 하는 경우(ex,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기계 설치)
- ⑤ 신성장 품목 공정을 이용하여 신성장과 관련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성장유망업종(품목) 지정 결과

- 그간 관계부처(산업부·미래부 등)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성장 산업분야 육성 방안'을 마련·추진
 - * 17대 신성장동력산업(산업부, '09),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산업·미래부, '15), 5대 신산업(산업부, '16), 바이오헬스 종합발전전략(복지부, '16), 11대 유망 신산업(기재부, '16) 등
- 이와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금융 등 각종 지원 기준 수립과정에서 그간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분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 산업은행 외 9개 정책금융기관간 협약('16.4월)에 의해 설립·운영중인 “신성장 정책금융센터”에서 신성장 산업분야 등을 취합·정리한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발간('16년말 발간, '17.4월 보완)
- 부록의 “성장유망업종(품목)”은 상기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상의 업종(품목)을 기초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17.7월)을 거쳐 마련

1-2. 지원(사업선정) 우선순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중 아래를 참고하여 우선 선발

- 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 ② 참여신청 후 청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
- ③ 3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④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인증받은 기업

- ⑤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의 창업·벤처지원 받고 있는 기업(TIPS, 창업 모태펀드 등 공모를 거쳐 투자 및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우대)
- ⑥ 기타 그 외 신성장 업종 및 주요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요건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 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은 II.참여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부분 참고

2-1. 사업장 요건

- ① 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 다만, 참여신청서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 고용한 청년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17.1월 이후 이 지원사업 참여신청 전까지 1명 이상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서 승인이후 '17.12월까지 2명 이상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
 - * 이 사업 시행전에 2명이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인원 산정시 2명으로 간주함

◇ (예시1) '17.2월 청년 2명 신규채용, '17.9월 참여신청서 승인, '17.9월 청년 1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

⇒ 사업시행 전 청년 2명을 채용하고, 참여신청서 승인이후 청년 1명을 채용하였으므로(2+1)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예시2) '17.2월 청년 5명 신규채용, '17.9월 참여신청서 승인, '17.9월 청년 2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

⇒ '17.2월 청년 5명을 채용했다라도 승인일 전에 채용된 청년은 2명으로 간주됨. 따라서, 승인일 전 채용된 청년 2명+ 승인이후 채용된 청년 2명의

합은 4명이므로 1명분 인건비 지원

◇ (예시3) '17.2월 청년 5명 신규채용, '17.9월 참여신청서 승인, '17.9월 청년 4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

⇒ '17.2월 청년 5명을 채용했다라도 승인일 전에 채용된 청년은 2명으로 간주됨. 따라서, 승인일 전 채용된 청년 2명+ 승인이후 채용된 청년 4명의 합은 6명이므로 2명분 인건비만 지원

◇ (예시4) '17.6월 청년 3명 신규채용하고 '17.9월 참여신청서 제출하여 '18.9월 까지 승인받은 사업주가 '18.2월 청년 1명을 신규채용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이 사업 시행전 채용된 청년이 지원대상 산정 시 포함되려면 적어도 '17.12월까지 청년 1명이상을 채용해야하므로,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다만, '18.2월에 청년을 1명 채용 후 '18.9월 승인기간 내에 추가로 2명 채용했을 경우, 3번째 청년이 채용된 시점부터 지원가능

② 장려금 지급기간 중에는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함

* III.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4-1.지원인원 산정 부분 참조

③ 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 (예시) A사는 참여신청서(피보험자 20명) 제출하여 청년 3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후 경영악화로 3명 감원, 이후 다시 2명 추가 감원하였다가 경기가 호전되자 청년 10명을 채용하여, 현재 동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는 25명임.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의 경우에는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신청서 제출이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있더라도 총 근로자수를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 한 사실이 참여신청서 승인이후 확인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되며,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함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2-2. 근로자 요건

①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신규채용 해야 함

-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3 지원 제의

사업장 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1. 지원제외 사업장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자체로 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④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3-2. 지원제의 근로자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름

- ③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⑤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⑥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4 지원내용

4.1. 지원인원 산정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참여신청서 심사를 통해 지원인원을 승인함

- 청년채용예정인원 3명당 인건비지원 1명분으로 승인함

*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지원(사업선정) 우선순위와 병행하여 근로자 수 및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사·선정

- ②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③ 지원기간은 사업주가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됨

◇ (예시) 청년 3명을 채용하겠다고 '18.1.10. 승인받은 A기업이 '18.2.1, 3.1, 4.1, 5.1, 6.1. 각각 청년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였음. 이 경우 지원기간의 시작일은?

⇒ 3번째 청년이 입사한 시점인 '18.4.1.부터 지원기간이 시작됨

가. 지원 인원이 1명인 경우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최소요건이 청년 3명 채용이므로, 지원기간 시작시점에 신규로 채용한 청년 3명이 모두 재직중에 있어야 함

- 3번째 청년 근로자 채용 전에 먼저 채용한 청년(1, 2명)이 중도 퇴사한 경우, 추가(대체)채용을 통해 3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기간이 시작됨.

- 이 경우 추가(대체)채용한 청년도 정규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시) 근로자수 20명인 중소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



* 청년 3명이 모두 재직중인 '17.8월 이후 지원이 시작됨

* 3번째 청년 채용전에 대체 채용한 2' 청년도 정규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지원 인원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지원 인원이 1명인 경우와 같이, 청년을 3명이상 신규채용하고 이들이 모두 재직중인 경우 지원기간 시작됨

* 신규채용된 청년 6명 또는 9명이 모두 동시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지원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실제 지원인원 2명분 또는 3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원금 지급구간 마다 청년 신규 채용자가 6명 또는 9명 이상 있어야 함

- 지원대상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청년 신규 채용자 6명 또는 9명을 채용한 때부터 각각의 지원인원에 대해 3년간 지원기간 시작

④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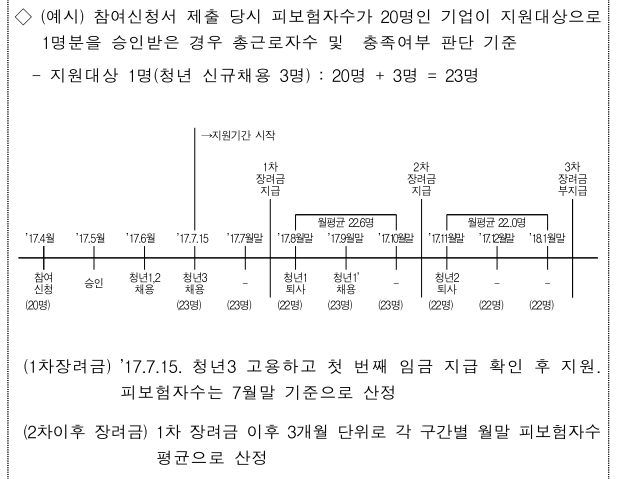
- 총 근로자수는 '참여신청서 제출일 직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 또는 6명 또는 9명)'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총 근로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3개월 단위(장려금 지급단위) 구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함.

*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3으로 나눈 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1차 장려금에 한해서는 3번째 청년을 고용하고 첫 임금지급 후 지원**되므로, 피보험자수 산정은 3번째 청년 고용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 수로 함
-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청년 신규채용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대체)채용으로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추가(대체)채용 청년도 정규직이어야 함

가. 지원 인원이 1명인 경우 총근로자 수

- 사업주의 참여신청서 제출일 직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 3명을 합한 수로 하고,
- 이를 충족하는 경우 매 지급시기마다 1명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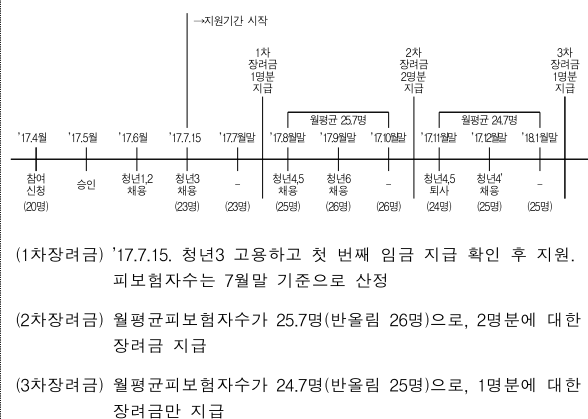


나. 지원 인원이 2명인 경우 총근로자 수

- 사업주의 참여신청서 제출일 직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 6명을 합한 수로 함
- 지원기간은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한 이후부터 시작되나, 이후 지원인원 2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지급구간마다 위 총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함
- 총근로자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 3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인원 1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6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함

◇ (예시) 참여신청서 제출 당시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2명분을 승인받은 경우 총근로자수 및 충족여부 판단 기준

- 지원대상 2명(청년 신규채용 6명) : 20명 + 6명 = 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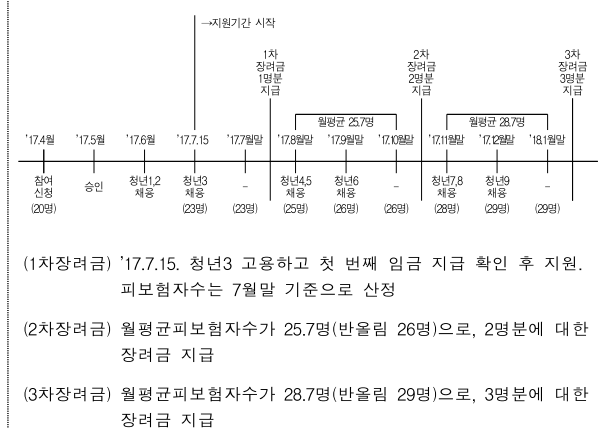


다. 지원 인원이 3명인 경우 총근로자 수

- 사업주의 참여신청서 제출일 직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 9명을 합한 수로 함
- 지원기간은 청년을 최소 3명 이상 채용한 경우에 시작되나, 이후 지원인원 3명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지급구간마다 위 총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함

◇ (예시) 참여신청서 제출 당시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3명분을 승인받은 경우 총근로자수 및 충족여부 판단 기준

- 지원대상 3명(청년 신규채용 9명) : 20명 + 9명 = 29명



4.2. 지원수준

- ①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함

- ② 각 장려금 지급구간 별로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장려금으로 지급함
- ③ 청년근로자 임금수준 산정은, 매 지급구간별 지원대상 산정이 되는 청년근로자(3명, 6명, 9명) 임금의 평균으로 함

4.3. 지원금 지급주기

1차 장려금은 지원기간이 시작되고 1개월 경과 후 지급하고, 이후 매 3개월 주기로 지급. 마지막 12차 지원은 5개월 단위로 지급함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주기	1개월	4개월	7개월	10개월	13개월	16개월	19개월	22개월	25개월	28개월	31개월	36개월

4.2. 지원한도

- ① 장려금은 기업당 총 3명분을 한도로 지원함
- ② 당초 1명분 또는 2명분에 대한 지원을 승인받은 기업도, 이후 참여신청서변경신청 또는 새로운 참여신청을 통해 총 3명분까지 지원이 가능함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IV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1 장려금 지급 신청

1-1. 신청 시기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매 지급주기 단위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1-2. 구비 서류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2 장려금 지급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2. 지급방법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2-3. 중복 지원 제한

-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 조정'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 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 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목적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1-2.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1-3. 지도·점검 주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 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1-4.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②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1-5. 조사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②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1. 근거 법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2-2.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지급제한

-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2-4. 추가징수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용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서 식

1.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서
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서 심사표
3.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승인통지서
4.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 변경신청서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6.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결정 통지서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업종(업종코드)			주생산물(대표품목)						
고용보험 보험자수 (신청서 제출일 직전월말일)			성장유망업종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총자산(최근 3년)			'14 원		매출액(최근 3년)		'14 원		
			'15 원				'15 원		
			'16 원				'16 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이메일		핸드폰번호				

2. 참여신청 개요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예정인원			정규직 신규채용 (명), 정규직 전환 (명)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계획 일정			년	월	정규직 신규채용 명, 정규직 전환 명	년	월	정규직 신규채용 명, 정규직 전환 명	
신규 채용(정규직 전환) 청년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수준				
					계 (최저임금대비) 00원(%)	고정급여	기타		
사업장 소개			사업장의 주생산물(대표품목) 등 (별지 작성 가능)						
지원 필요성 등			장려금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별지 작성 가능)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3.총자산 및 매출액 자료 4.주생산물 설명자료 등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종)]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서 심사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물/서비스	
	피보험자수 (신청서 제출일 직전월말일)	명	고용안정사업 참여 이력	☐ 있음 ☐ 없음
심사 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30			
※ 업체규모, 재정건전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현황에 대한 심사				
사업 내용	40			
※ 대표품목 등 성장유망업종 해당여부, 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				
고용 창출 계획	30			
※ 청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규모 및 내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				
가점/감점	±5			
※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 이력, 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 등 고려				
총점	100			
심사평				

심사위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 (□승인 □불승인)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전환) 예정인원		명	(명분 인건비 지원)
3. 승인내용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전환) 인원		명	(명분 인건비 지원)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참여신청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연락처	
2. 변경 요청 사항			
지원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명	
기타			
3. 변경 요청 사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참여신청일 기준 (신청서 제출일 직전월 말일 기준)		장려금 지급구분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년 월 (명)		년 월 (명) 년 월 (명) 년 월 (명)	
		(차수)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신청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정규직전환)일 (년 월 일)		월 임금(원)
장려금 신청인원 ()명, 신청금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X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회차
3.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명	원
신청기간		년	회차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